

-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 -
일괄입찰 설계심의 계획

□ 공사개요

위 치	중구 운서동 ~ 용진군 북도면 신도리 일원
구 모	L=3,821m (교량 2,545m, 토공 1,276m)
추 정 금 액	금1,12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52개월
발 주 청	종합건설본부(토목부)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 가중치기준방식: 설계평가 70% + 가격점수 30%

▷ 설계점수 채점방법: 항목별차등(10%) 후 위원별 차등(10%) 후 총점차등(10%)

□ 입찰참가업체 현황 (대표사 순서는 가나다 순임)

입찰업체	공 동 도 급 사	
	시 공 분 야	설 계 분 야
대림건설(주) (35%) · 대림건설(주)외 5개사 * 지역참여비율 70%	(주)대우건설(30%), 경화건설(주)(15%), 풍창건설(주)(10%), (주)준서예건(5%), 통일건설(주)(5%)	(주)유신, (주)삼보기술단,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주)한화건설 (52%) · (주)한화건설외 6개사 * 지역참여비율 48%	(주)영동건설(10%), (주)국원건설(10%) 원광건설(주)(10%), 동우개발(주)(7%) (주)선두종합건설(6%), 배명종합건설(주)(5%)	(주)수성엔지니어링 (주)한국종합기술, (주)도담이앤씨, (주)다산이앤지 (주)대한콘설탄트

※ 심의위원으로 선정되면 해당 입찰참여업체와의 접촉 일체 금지

□ 심의위원 구성 (5개 분야)

구 분	계	도로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토목시공	환경
평가배점	100점	21점	34점	16점	24점	5점
선정위원	11명	2명	3명	2명	2명	2명

□ 설계심의 세부일정(심의위원 참석일: 11.24일, 11.27일, 12.3일)

구 분	일 시	장 소	주 요 내 용
심의계획설명회 및 소위원회 구성	2020. 11. 23.(월) 14:00 ~	건설심사과 (소회의실)	심의일정 설명, 심의위원 선정
현장답사 및 공동설명회	2020. 11. 24.(화) 10:00 ~	종합건설본부 회의실	현장답사, 사업설명
기술검토회의	2020. 11. 27.(금) 14:00 ~		질문선정, 평가계획심의
설계평가회의	2020. 12. 3.(목) 09:00 ~		설계심의 및 평가

□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설계심의분과 위원회 심의위원이 할 일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부 훈령 제2020-1316호, 2020.08.25.) 제4장(제24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및 최소설계기준 미달여부 검토, 심의위원 공통질문 작성, 심의위원 공통질문 및 업체간 질문서 채택, 설계심의 및 평가(설계점수 채점) 등을 하셔야 합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심사과(440-3751, 3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